

의안번호	2205152
의 퇴 인	김영진 의원
회 답 일	2025. 1. 6.
추계번호	24D474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3,000만원(연평균 4,600만원)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230	-	-	-	-	230	46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의무규정
2	안 제8조(사무특례)	·특례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제1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회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제2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제5호)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제6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 등(제10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제11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	재량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등(제12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의 말소 및 보조금의 지원·환수 등(제14호)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지정해제(제15호)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제16호) -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제18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제19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제20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사용약관 신고 및 시설 사용료 인가 등(제2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신고,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제23호)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제24호) -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등(제25호) -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등(제26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제27호)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제28호)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29호)	
3	안 제9조(비용의 지원)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0조(재정 특례)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¹⁾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개정 2014.5.28.>)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3	안 제8조(사무 특례)	×	제정안에 따라 추가될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될 신규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하기가 곤란함
4	안 제9조(비용의 지원)	×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국가 및 도의 재정 지원 규모 및 지원 비율 등을 추정 곤란
5	안 제10조(재정 특례)	-	미대상: 특례시 조정교부금 재원확보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여 특례시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특례시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방자치법」²⁾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분류³⁾하면서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

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2)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3) 현행법에 따른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4곳임(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02호)

획(안 제6조) 및 시행계획(안 제7조)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행정안전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및 예산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⁴⁾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7년에 2억 3,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2023년), 1억 3,700만원
 - 인구감소지역 대응(2022~2026년)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2022년), 3억 2,700만원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30	-	-	-	-	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